

부산광역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성과수당 지급 규정

부산광역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성과수당 지급 규정

제정 2021.06.23.

개정 2022.05.2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산광역시 대표로 전국체육대회(동·하계)에 참가하여 입상(1,2,3위)한 선수와 지도한 지도자 및 종합입상(1,2,3위)한 회원종목단체에 대해 성과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타당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성과수당 지급대상은 부산광역시 대표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엘리트부분 입상한 선수, 지도한 지도자(선수 등록된 팀의 지도자에게 지급하며 타시도 등록팀도 포함), 종합 입상한 회원종목단체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2조의 대상에 대한 성과수당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회원종목단체 : 종합입상(1, 2, 3위)한 회원종목단체
 - 가. 1위 단체 : 5,000,000원
 - 나. 2위 단체 : 3,000,000원
 - 다. 3위 단체 : 2,000,000원
2. 지도자 :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득점한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기준은 종목별 성과수당 지급기준 별표 1에 의한다.
3. 입상(1, 2, 3위)한 선수(팀원)
 - 가. 1위 선수 : 500,000원
 - 나. 2위 선수 : 300,000원
 - 다. 3위 선수 : 200,000원

제4조(지급시기) 성과수당의 지급시기는 당 해 년도 전국체전 종료 후로 한다.

제5조(대상제외) ① 제2조에 명시된 대상이라 할지라도 본회나 중앙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지부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징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 지나지 않은 지도자와 선수는 제외한다.

② 본회 규정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제3조 1호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지급대상관리) 본회 회원종목단체는 제5조와 관련하여 징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전 본회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액조정) 성과수당 금액은 제3조에 명시된 성과수당의 지급액을 원칙으로 하나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지급하는 총액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기타사항) 전국체육대회(동·하계)가 개최되지 않을 시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수당을 지급한다.

1. 지급대상 대회는 각 종목별 전국체육대회(동·하계) 정식종목 중 주요대회로 하고, 매년 2월까지 종목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로 선정한다.
2. 지급대상은 지도자로 제한하며,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고등·대학·일반부와 전국동계체육대회 정식종목 초등·중등·고등·대학·일반부로 한다.
3. 지급 기준금액은 종목별 성과수당 지급기준 “별표 1의 나. 입상지도자 성과수당 지급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한다. 단, 최고 입상 메달 외 추가로 획득한 메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금액의 50%를 지급한다.
4. 지급시기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은 당해연도 12월, 전국동계체육대회 정식종목은 당해연도 4월에 지급한다.
5. 그 외 사항은 제5조,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05.24.]

부 칙(2021.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전국체육대회 성과수당 (지도자) 지급기준 (제3조제2호 관련)

가. 지급 기준 : 득점 당 5천 원 + 입상지도자 성과수당 지급 기준금액

나. 입상지도자 성과수당 지급 기준금액

(단위 : 만원)

구분	기 준	해 당 종 목	지 급 액		
			금	은	동
개 인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개인전으로 분류된 종목 및 단체전 및 개인전을 병행 실시하는 종목의 개인전 <40종목>	육상, 수영, 테니스, 소프트테니스(복식,단식), 탁구(단식, 혼합복식), 자전거,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궁도(개인), 양궁(개인,거리별), 사격(개인), 승마, 체조(개인) 펜싱(개인), 배드민턴(복식,혼복), 태권도, 조정(싱글스컬,더블스컬, 무타페어), 볼링(개인,마스터즈,2인조), 롤러, 요트, 근대5종(개인), 카누, 골프(개인), 우슈, 편수영, 철인3종, 스키시(개인), 당구, 산악, 댄스스포츠, 바둑(개인,혼성페어), 수상스키웨이크보드, 택견, 에어로빅(개인,2인조,3인조),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90	45	24
준 단 체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개인전종목 중 단체로 채점하는 종목 <18종목>	육상(계주,로드레이스), 수영(계영), 자전거(단체), 유도(단체), 양궁(단체,혼성단체), 사격(단체), 체조(단체), 조정(에이트, 쿼드러플스컬), 볼링(3-5인조), 롤러(계주), 카누(K-4), 편수영(계영), 철인3종(단체), 바둑(단체), 에어로빅(단체,힙합단체) 스키(계주), 빙상(계주), 바이애슬론(계주)	120	60	30
단 체 I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단체전 및 개인전을 병행 실시하는 종목의 단체전 경기 <8종목>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탁구, 펜싱, 배드민턴, 스키시(단체), 컬링, 빙상(싱크로나이즈드)	180	90	45
단 체 II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단체전 및 개인전을 병행 실시하는 2개 종별 이하인 종목의 단체전 경기 (단 별도의 개인전을 실시하지 않는 종목) <3종목>	궁도, 근대5종(계주,단체), 골프	240	120	60
단 체 III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순수단체전으로 분류된 종목 <11종목>	수구, 축구, 야구소프트볼,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검도, 하키, 세팍타크로, 아이스하키	300	150	75

* 비고 : 동계종목은 입상지도자 성과수당 지급기준금액의 250% 지급(단, 미개최시에는 미적용)